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토교통 분야 기업지원 총괄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에 창업 및 기업지원 업무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7. 00. ~ 8. 00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규제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창업 및 기업 지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 (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의 업무) 법 제16조제4항제3호 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	제12조 (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의 업무) ----- ----- ----- -----
1.~ 4. (생략)	1.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5.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창업 및 기업 지원</u>
<u>5.</u>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	<u>6.</u> ----- ----- 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	
연 락 처	(044) 201 - 3261